

## 신고자 보호



### 신분보장

- ▶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징계·해고 등 불이익 처분 불가
- ▶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 가능



### 비밀보장

- ▶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불가



### 신변보호

- ▶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,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



### 책임감면

- ▶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및 신고 등과 관련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가능



## 신고자 보상

### 보상

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·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(최대 30억)

### 포상

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(최대 5억)



## 신고 상담



## 신고 방법

- 온라인** | 청렴포털-부패공익신고 [www.clean.go.kr](http://www.clean.go.kr)
- 팩스** | 044-200-7971
- 방문·우편** |
  -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국민권익위원회 1층
  -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,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



## 신고 요령

- ▶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
- ▶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,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



#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과 함께합니다.





## 신고대상

정부지원금(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등)을 부정청구한 경우



## 부정청구의 유형

### 허위청구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

### 과다청구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

### 목적외사용

법령·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

### 오지급

그 밖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

##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



### 산업자원 분야



판매실적 허위 보고를 통해 부정수급



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부정수급

### 농림수산 분야



본인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



당초에 지정된 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고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

### 보건복지 분야



허위 교사 등록, 식재료비 및 특별활동비를 유용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



인력·급여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수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

### 환경 분야



계약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



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

### 고용노동 분야



재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·제출하여 부정수급



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을 통해 부정수급

